소통하는 의정

제396회 임시회 '22. 1. 21.(금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####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 ○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### 3. 제안사유

○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

## 4. 주요내용

- O 금연구역의 지정(안 제3조)
  - 도시공원,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
  -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, 주유소
- O 금연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- O 과태료(안 제7조)
- O 권한의 위임(안 제8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덕항)

#### 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, 변경 및 해제, 표시,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  - ※ 17개 광역시·도 중 금연조례 **미제정** 지역(5): 인천, 대구, 세종, 강원, **충북**

#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O 안 제1조 및 제2조는,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(흡연, 간접흡연, 금연구역)에 대해 정의함.
- O 안 제3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- 이는,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체위임 사항을 규정한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7항에 따른 것임.
- 같은 조 제1항은,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도시공원, 절대보호 구역,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, 주유소6)를 명시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- 같은 조 제2항에서,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.
- 또한,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연구역 지정 시 해당 시장·군수와 협의토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, 금역구역의 지정이 지방자치단체(도 뿐만 아니라 시·군 포함)위임사무로 현재 충청북도 내 11개 시·군 중 음성을 제외한 10개 시·군에서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고, 금연구역 장소가 시·군 소재임을 고려할 때, 금역구역지정에 관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함.
- 다만, 충북에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「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운영조례」에 따라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도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,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참여하는 "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"가 설치·운영 중임. 이에주민의견 수렴의 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 시 본 협의회의 심의를

<sup>6)</sup> 가스충전소의 경우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49조에 따라 사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.

제49조(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)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받도록 규정하는 것도 검토 필요성이 있음.

- ※ 경기도의 경우, 금연구역 지정 시, 「국민건강증진법」과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라 설치된 "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"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<sup>7)</sup>하고 있음.
- O 안 제4조 및 제5조는, 금연구역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O 안 제6조는,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 활동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와 사업 수행의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7조 및 제8조는,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사무 권한의 시장·군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과태료 부과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것이며, 사무의 위임도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에 따라 위임이 가능하며, 과 대료 부과·징수 업무가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장, 군수에게도 위임 된 바 문제가 없음.

#### □ 국민건강증진법

- 제34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<u>10만원</u>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2.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<u>과태료는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<u>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</u>·구청장이 <u>부과</u> · 징수한다.

#### 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<sup>7) 「</sup>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」제8조(금연구역 지정 방법) ① 도지 사는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·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 또는 설명회, 설문조사,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「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, 변경 및 해제, 표시,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조례안 예고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